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94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김용민·문정복·백승아

민형배 • 문금주 • 장경태

이재정 · 김용만 · 박주민

황운하 • 박지원 • 김원이

문진석 · 김승원 · 이수진

강준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06헌마256)을 내렸음.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한정 되어있음. 국민투표는 국가의 주요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된 명백한 국민의 권리임.

이에 「국민투표법」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들의 국민 투표권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등).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투표인의 정의) 이 법에서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제91조의3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제1항 중 "國民投票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區廳長(自治區의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 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 邑長 · 面長(이하 "區 · 市 · 邑 · 面의長"이라 한다)은 國民投票日公告日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 · 시 · 군"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7조에 따른 투표권자(제91조의3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 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이 법에 규정된 운동 이외의 운동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운동에 관하여 준용하는「공직선거법」의 해당 조문에 대하여 벌칙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벌칙을 적용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 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소 및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의2(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91조의2(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투표를 공고한 날 후 10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제91조의3(재외국민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는 "국민투표"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투표"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투표"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인"으로, "재외선거인명부"는 "재외투표인명부"로, "국외선거운동"은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본다.

제91조의4(벌칙의 적용)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문에 대하여 벌칙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벌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第2條(投票人의 定義) 이 法에서 "投票人"이라 함은 投票權이 있는 者로서 投票人名簿에 登 載된 者를 말한다.

第14條(投票人名簿의 작성) ① 國 民投票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 마다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 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 다)・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 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 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 域에 한한다)・邑長・面長(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 다)은 國民投票日公告日 현재 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__출입국과_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개 정 안

제2조(투표인의 정의) 이 법에서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제91조 의3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第14條(投票人名簿의 작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제7조에 따른 투표권자(제91조의3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投票區 別로 調査하여 國民投票日公告 日로부터 5日 이내에 投票人名 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u><신 설></u>

<신 설>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운동에 관한 「공직선 거법」의 준용) ① 이 법에 규 정된 운동 이외의 운동에 관하 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선 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② 운동에 관하여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문에 대하여 벌칙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벌칙을 적용한다.

제51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 ①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 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

<신 설>

<신 설>

<신 설>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 거법」의 사전투표소 및 사전 투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의2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91조의2(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 회 설치·운영)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투표를 공고한 날 후 10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30 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 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1조의3(재외국민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는 "국민투표"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투표"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투표"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투표"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투표"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투표"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투표"로, "재외선거"는 "재외투표인"으로, "재외선거인명부"는 "재외투표인명부"는 "재외투표인명부"로, "국외선거운동"은 "재외투표인명부"로, "국외선거운동"은 "재외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본 <u>다.</u>
<u><신 설></u>	제91조의4(벌칙의 적용) 재외국민
	투표에 관하여 준용하는「공직
	선거법」의 해당 조문에 대하
	여 벌칙이 있는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벌칙을
	적용한다.